

[별표 1] <개정 1995.12.30>

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(제9조관련)

가 축 별	규 모	비 고
젖 소	30마리	1.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. 2.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.
소	30마리	
돼 지	200마리	
산 양	300마리	
면 양	300마리	
토 끼	5,000마리	
닭	10,000마리	
오 리	10,000마리	